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15.

###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명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박○진	1997.04.10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결정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 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부재	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244 밀라노 304호

4. 공고기간: 2026. 6. 15. ~ 2026. 6. 29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안동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진연(Tel. 054-851-80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